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분석

Analysis on the Establishment Trend of ITU Copyright Policy

이상무(S.M. Lee)

박기식(K.S. Park)

표준기획연구팀 선임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센터장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초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1. 서론

일반적으로 표준화의 추진시 표준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인데 반하여 특허는 기술의 사유를 법적인 권리로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상충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표준화시 지적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정책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권리의 양대 주류는 특허와 저작권이다. 특허와 저작권은 같은 지적재산권이라도 매우 대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특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의 하나로서 기술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술과 일체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저작권은 주로 일반 문화·사회 분야에서 인간의 사고로부터 비롯된 모든 창작의 표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자에

는 이러한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와 같이 주로 기술 문제를 다루는 활동에서 특허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만 저작권은 표준기술과의 관계는 아니며 일반적인 문서 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대부분 표준화기구들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은 사실 특허권을 그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저작권정책 수립을 고려하게 된 것은 스피치 코딩(speech coding) 기술의 권고안 제정시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첨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다다름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특히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초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추진하여 그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다[1, 2].

<표 1> ITU 특허정책의 내용

내용 구분	항목	핵심 내용	비고
기본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의 참여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함 표준의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독점권 남용은 배제되어야 함 표준의 달성 후 특허권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에게 일임함 	전문적인 지적재산권법적인 문제나 계약상의 문제를 특허정책 및 그 시행에서 다룰 수 없음
시행 지침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중인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표준화 기구의 입장에서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을 이룰 수는 없음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 공개시 특허권자의 선택 사항 2.1 권리 주장의 포기: 무상 허여 2.2 조건부 라이선싱: 합리적 조건(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하에서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적용 2.3 특허권 허여의 거절: 권고안 추진의 중단 	
	제3항	상기 제2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Written Statement)의 제출	

본 고에서는 이러한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발단과 저작권 귀속 문제를 비롯하여 논란이 된 내용을 주로 특허와 저작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특수성으로 인한 적용상의 문제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된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설명한다.

II. 저작권 문제의 대두

ITU가 표준화의 추진에 있어서 상충 작용을 일으키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정책은 ITU-T(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에서 규정하고 있는 ‘Statement on TSB(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Patent Policy’이다. 이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이 추가 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ITU의 작업절차 및 규정상에 ITU가 표준화의 추진상 필요하여 일반 문서에 대한 복제 및 유포 권한을 인정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을 뿐, 저작권으로 인하여 표준의 제정에 대립하여 발생하는 권리 보호와 그 사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내용과는 별 무관한 저작권으로 인한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 발생이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TU 특허정책의 내용은 간결 명료한 것이 특색이

다. 그 전체 구성 및 핵심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권고안의 작성 서류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소스코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권고안의 표준 부분(normative part)으로서 삽입되는 스피치 코더(speech coder)에 대한 기술은 원래 슈도 코드(pseudo code, 이것은 직접 사용 가능하거나 컴파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블록 및 모듈 기능들의 목록과 여러 모듈들의 순차적 실행을 위한 타임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상세 내역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근래의 스피치 코더는 이러한 서류 명세가 거의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상세 기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오류 확률과 그것을 ITU-T에 맞는 공식 용어로 변환하는 데 드는 비용 및 변환시의 오류 확률이 증가하여 큰 처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실제 그러한 권고안의 구현에 있어서도 상세 기술서로부터 ITU의 공식 프로그램인 ANSI-C 소스코드를 생성하는 작업은 성공한다는 보장없이 때로는 한달 동안 여섯 사람분 작업량 이상의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스피치 코더에 대한 권고안을 위한 기고자들은 권고안의 표준 부분으로 들어갈 상세 기술서로서 소프트웨어 즉, ANSI-C 소스코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되고 있으며 이것은 각 기고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요구조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새로운 절차 규정이 권고안 G.723.1 (Dual Rate Speech Coder for Multimedia Communications Transmitting at 5.3 and 6.3kbit/s)과 그 부속서들, G.729(Coding of Speech at 8kbit/s using conjugate-structure algebraic-code-excited linear-prediction (CS-ACELP))와 그 부속서들(A and B)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스피치 코더에 대한 소스코드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동작 구현기술을 담고 있는 프로그래밍 내역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므로 잠재적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위협에 아무런 사전 대비 방편없이 노출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협 부담을 우려하여 몇몇 회원사들이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침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독일측은 저작권의 귀속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여 ISO/IE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처럼 권고안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ITU가 일괄로 이양받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1998년 1, 2월에 있었던 SG(Study Group)16 회의에서 독일 행정부가 권고안 G.729의 부속서 C(Reference floating-point implementation for G.729-CS-ACELP 8kbit/s speech coding)에 표준 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C 코드 명세의 저작권 인정을 반대하여 당해 권고안이 승인되지 못한 것이었다. 독일측이 당해 표준명세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반대한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차후 표준의 이용시 따르게 될 불편을 크게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처리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정립하여야 할 소요가 제기되었다[3].

III. 수립과정상의 논의 및 문제 분석

1. 주요 참여국들의 의견 분석

가. 독일

독일측은 처음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

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저작권은 ISO/IEC에서처럼 ITU가 일괄로 이양받아 표준의 보급과 함께 무료로 라이선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차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회의(*98.9.7~9.11) 때에는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권리 성격상의 차이로 볼 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4차 TSAG 회의(*99.4.12~4.16)에서는 주요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정책상에서 저작권에 대한 처리 규정을 조사·비교하여 현재 ITU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의 개별적 라이선싱을 인정하는 별도의 저작권정책 수립안은 다른 표준화기구들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서 유독 ITU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나. 미국

독일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은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정책 정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저작권을 특허와 차별하여 ITU가 저작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96년 WTSC(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에서 ITU-T Study Group의 표준화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제출물의 배포와 발행에 관한 처리 규정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이 Recommendation A.1 Section 3.1.4에 있다. 여기에는 ITU가 Study Group에 제출된 자료의 권고안 사용 목적의 배포와 발행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진술되어 있으며 저작자의 기본적인 지적재산권을 ITU에 양도하도록 요청이라도 해온 ITU의 정책이나 실행은 없다고 하였다.

특히 저작권정책의 필요를 비롯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이 자신의 기고에 표명한 우려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컴퓨터 언어인 소프트웨어의 권리 보호 방법으로서 종종 경제적이거나 법적인 시행을 고려하여 특허나 저작권을 선택할 상황이 있으며, 그러한 선택 의지가 창조적 발명이나 구현의 성격에 의한 차

별성을 두어 국제조작기구의 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고자들의 기본적인 지적재산권이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다. 영국

영국은 권고안에 포함될 것을 의도하는 C 코드를 권고안의 결정 전에 TSB에 위임하여 필요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때의 테스트는 아직 표준이 승인되기 전이므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실제 프로그래밍 내역은 볼 수 없도록 소스코드로부터 컴파일한 오브젝트코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라포처 그룹(Rapporteur's group)은 Study Group에 의한 이전의 지침과 최종 승인된 선례를 참조하여 어떤 특정 권고안의 표준부분으로서 C 코드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C 코드를 TSB에 맡기지 않으면 권고안의 결정은 자동으로 무산된다. C 코드가 TSB에 맡겨진 상태에서 결정이 성공되면 결정일로부터 TSB가 그 소스코드를 보유하도록 하고, 결정이 실패하면 소스코드의 모든 사본들과 함께 저작자에게 조속히 반환하도록 한다. 권고안의 표준부분으로서 포함되는 C 코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의 사용이든지 무료 사용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시험과 평가를 위한 사용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의 문구를 수반하도록 한다. 이같은 주의는 TSB가 배포하는 모든 C 코드를 포함한 문서에 삽입하도록 한다.

라.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표준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당성부터 논의하였다. 우선 독창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1986년에 체결된 베른협약에 의해 아무런 등록이 필요없는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ITU-T의 권고안에 포함된 ANSI-C 소스코드도 알고리즘의 고급기술의 한 형태로서 제3자가 같은 결과를 제공하고 같은 설명을 갖는 소프트웨어나 그의 파생 형태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소프트웨어 산업은 거의 모든 주요국들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경제적 활동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ANSI-C 소스코드는 거의 모든 시스템 환경에서 적은 투자를 가지고 자동 번역기를 통하여 적용 및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인정되고 있어 이것으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ANSI-C 소스코드가 권고안의 표준부분으로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며 ITU-T는 C 코드를 포함한 저작물의 배포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무료로 준대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마. 일본

ITU로의 권리 이양의 범위에 있어서 전면 이양으로 본다면 ITU가 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계약 처리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완전한 권리 양도로 한다면 원 저작자로서는 권리를 양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 활용 권한이 없게 되는 것임을 우려하였다. 아울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ITU에 양도할 때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라이선싱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은 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유형의 권리를 어떻게 라이선싱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권고안상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인한 부담 문제, 즉 표준의 이용시 특허권에 대하여 저작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표준의

<표 2> 특허와 저작권의 특성 비교

특성유형 \ 권리유형	특허	저작권
권리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subject matter 등	가시화된 매체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저작물
보호대상	발명에 내재된 독창적 아이디어	매체를 통하여 나타난 표현 자체
보호영역	권리 등록 국가	지역의 제한 없음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20년	최소 50년
권리의 사용 유형	제조, 판매, 제공 등	재발행, 파생 작품의 제작, 공연
권리의 취득 절차 및 비용	법적 출원 및 등록과 그 소요 비용 및 등록 후 유지 비용	자연발생권
연구개발 투자비용 측면 (S/W 저작권과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연구개발 범위에 내재 • 권리확보활동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직접적인 투자경비가 필요할 수 있음 • 개발된 소프트웨어 자체에 한정

이용 비용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어 반드시 소스코드를 권고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복잡성이 강하여 이용 허가를 받기가 매우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지적 사항으로서 표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오류(bug)가 발생했을시 원저작자의 보정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에 관련된 ITU 입장에서의 책임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4].

2.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분석

특허와 저작권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특허와 저작권의 근본 속성상의 차이는 특허는 산업기술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기술성을 보호하는 반면에 저작권은 표현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통신기술 분야를 다루는 표준화에 있어서 저작권이 중요한 권리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은 기본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있어서 특허는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보통 2년여의 심사과정을 거쳐 권리로서 등록이 되고 각 절차마다에 따르는 소요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로 출원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도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특허 획득을 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과 정보조사, 또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내용 중 적절한 권리 범위의 책정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공식 서류인 명세서의 준비, 특허 마인드 형성을 위한 제반 교육의 실시, 전문 지식과 자문을 받기 위한 특허변호사 혹은 변리사의 활용 등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 하나의 조직적이고 기획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허권 획득을 위하여 들여야 하는 노력은 상당한 것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저작권은 자연발생권이기 때문에 저작 자체의 활동을 제외하고 권리 획득을 위하여 저작자가 별도로 투자하여야 할 노력은 많지 않다.

그리고 권리 요건의 측면에서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분야에 쓰일 수 있는 발명으로서 적절한 진보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법적으로도 복잡한 해석을 담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나 저작권은 다만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독창적인 신규성을 갖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볼 때, 표준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작권을 특허권과 동등한 정책 프레임에 포함시키려고 할 때 지적재산권이라는 점 외에 이상의 속성 요소들에서 사실상 거의 일치되는 점이 없는 이 양자의 권리를 어떻게 정책상의 같은 처리 방법이 되는 공통 분모로 소화할 것인가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5].

3. 타 표준화기구의 저작권정책

표준기술문서에 포함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예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기구는 ISO/IEC 이다. 지적재산권 정책상으로는 ISO/IEC 지침(directives) 제1부 기술 작업절차의 제2절 국제표준의 개발 제11조 저작권에서 ISO/IEC의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된 문서들의 저작권은 ISO/IEC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ISO/IEC 저작권정책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는 ISO/IEC JTC1 SC29(Sub-Committee 29)에서 개발된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관련 표준인 MPEG-2 NBC/MPEG-4 Audio standard(ISO/IEC 13818-7, 14496-1, 2 and 3)에 잘 나타나 있다. ISO/IEC의 저작권정책과 관련된 시행지침(code of practice)의 예에서 ISO/IEC는 상기 MPEG 관련 표준의 사용자들에게 당해 표준에 적합한 구현기술에 한하여 그 표준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란 표준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작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사용의 범위는 해당 표준의 구현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기술 및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라이선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허용되는 데 있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원저작자는 본연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표준의 사용자 이외의 삼자에게 사용권이 전도된다는가, 표준의 적용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하여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원저작자가 표준화기구인 ISO/IEC에게 자신의 저작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를 주는 효과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6].

이외의 다른 표준화기구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문서 처리를 위한 저작권 규정은 기본적으로 두고

있으나 특별히 표준기술문서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에 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는 기구는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저작권의 귀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해 기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고 있다.

4.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가. 저작권자의 복잡성

저작권자의 복잡성이란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직접 프로그래밍, 즉 소프트웨어의 저작에 참여하는 주체(개인 혹은 단체나 기업, 기관, 법인 등)가 다양한 형성 관계의 바탕 위에 다수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럴 때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싱을 위하여 우선 부담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관여된 모든 주체들 각각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면 어떤 한 대표 주체가 선정되어 그 주체와의 단일 라이선싱 계약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복잡된 주체들 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때, 그 주체들의 특성과 연관 관계 등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의 기여도 평가와 그에 따른 이득의 분배 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거나 주체 상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라이선싱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결국 표준의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성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3차 TSAG 회의에서 회원사인 AT&T에서 설명 자료¹⁾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이 자료에서 AT&T는 ITU-T의 권고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자의 복잡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하나의 소스-하나의 회사(Single Source-One Company)

1) Copyright Impacts of Creating Software in a Collaborative Environment

단일 회사가 제작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의 주체는 당해 회사로서 명백하다.

- 하나의 소스-하나의 협의체(Single Source-One Consortium)

소프트웨어는 협의체의 각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은 이들의 공동 소유가 되며 이 컨소시엄이 저작권 소유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싱에 따른 로열티 수익의 타당한 분배를 위하여는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협력 소스-다중 소스의 수정없는 부분 수용(Collaborative Sources-Parts of Multiple Sources are accepted without ITU editing)

협력 소스는 원래 개별로 작성된 소스들이 표준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소스로 융합된 것으로서 이때의 각 원 소스들의 저작 주체는 융합된 소스에 대하여 공동 저작권 소유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 각각으로부터의 저작권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원 소스들 중의 일부 혹은 전체의 저작 주체가 동일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원 소스의 일부가 발췌되어 하나의 소스로 통합되는 것이 보통이다.

- 협력 소스-다중 소스의 통합 과정 중 수정된 부분 수용(Collaborative Sources-Parts of Multiple Sources are accepted with ITU editing)

세번째의 내용에서 수정 저작자의 공동 소유 권리가 추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적용 방법에 있어서 국가마다의 저작권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협력 소스에 대한 공동 저작권 소유의 인정 범위는 실질적인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대개는 분할되지 않은 전체 코드에 대한 것이며²⁾ 각 소유자로부터의 개별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스 코드의 협력 부분에 참여한 주체 각각이 전체 코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인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7].

나. 표준 적용상의 비용 부담

표준 적용상의 비용 부담이란 표준의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표준기술을 구현하여 제품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려면 그 표준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로열티 부담을 말하는 것이다. 근래의 표준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문화된 기술들이 융합·복합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표준체계도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사용 표준에 관여되는 지적재산권도 대량으로 누적되어 표준 이용자의 라이선싱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표준의 시장 적용에 하나의 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로열티 축적 효과(cumulative effect)라고 하는데, 현 시장의 추세로는 축적된 로열티 효율이 10%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개별 특허권자마다의 라이선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하나의 집합체로 형성한 기반 위에 연대하여 각 권리자마다의 라이선싱이 아닌 한번의 라이선싱으로 특정 기술 분야의 표준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집합체로 형성된 특허들에 대한 실시권 허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원화된 라이선싱 체계와 로열티 경감 효과를 달성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한 상태에서 예측된 수치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기술 및 표준 체계의 복합으로 인하여 기술 분야별 특허 POOL들에 의한 로열티 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여기에 특허 POOL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라이선싱을 추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라이선싱에 의한 로열티 부담물이 존재하므로 그것이 다시 전체 축적 로열티로 반영되기 때문이다[8].

이렇게 특허권만으로도 표준의 이용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작자의 복잡성까지 포함된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싱이 적용된다면 지적재산 권리별 로열티 축적 효과가 부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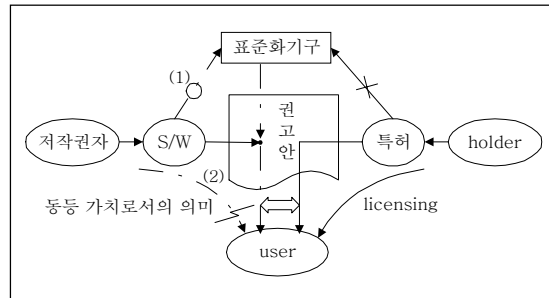
2) 17 U.S.C. §§ 101, 201(a)

5. 표준기술문서에의 지적재산권 포함과 라이선싱 구조

ITU 저작권 처리 문제의 본원적인 핵심이 되는 사안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은 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상의 관계는 단지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모든 표준화기구의 표준기술문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소유 권한이 부여되는 독창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별다른 입장이나 의도가 있지 않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쉽게 공개하지 않고 또한 일반적으로 표준기술문서에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포함해야만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어오지 않았으나, 유독 ITU의 해당 표준기술 및 표준안 처리 절차상의 특성에 따라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서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연관 관계가 명백한 특허권의 구도를 설명하면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포함되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표준의 이용자에게 라이선싱을 하는 것이며 표준화기구로의 권리 이양 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권자가 라이선싱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표준화기구가 일괄로 권리를 이양받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이면에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표준화의 기술문서상에서 동등한 가치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주요한 내재된 관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 route((1), (2))에 따른 적용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경중 분석을 통한 선택이나 아니면 양자를 절충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정책이라는 것은 넓게는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표준화기구의 활동상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서 처리 범위를 포괄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만, 본 문제의 사안에서 다루는 것은 그



(그림 1) 표준기술문서에 포함되는 특허와 저작권의 비교 구도

보다는 매우 특별한 상황으로서 특허권처럼 실제 표준의 기술성과 연관된 저작권에 대한 처리 방침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모든 문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문서에 대한 저작권 처리 지침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기술성과 관련된 저작권은 현재의 사례에서 곧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역시 특허권과 동일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의 처리를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적절한 지침이 표준화 처리 절차상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특허와 저작권의 특성상의 차이가 되는 것은 특허는 기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미 기술과 일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누구든 이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특허를 스스로 혹은 외부 정보에 의하여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되지 못한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기술한 문서는 그 자체로서 전면 공개하는 것이므로 무단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표준기술문서에 포함되는 이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특허권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하거나(그림 1)의 (2)번 route) 혹은 (그림 1)에서 (1)번과 (2)번 route를 절충시킨 방안까지는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표 3> 저작권정책 적용상의 종합적 문제 진단표

라이선싱 방식	권리의 귀속	장점		단점
		저작권자	표준이용자	
정규 라이선싱	저작권자	가장 원초적(근원적)인 방법으로서 저작권자 본연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저작권자 중심의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즉 저작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한,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방법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의 이용 부담 - 로열티 축적 효과 - 라이선싱의 복잡성
무상 라이선싱	-	-	표준이용의 비용 부담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자의 선택 제약 라이선싱의 복잡성 문제
	ITU	-	표준의 이용 부담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자의 권리계약 우려 표준화기구의 부담

것이 되며, (1)번 route를 취한다면 일반적인 저작권 처리 규정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route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 기초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의견과 논점들을 결과적으로 종합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들의 집합은 단적으로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권고안에 포함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이용권을 허여하지 않는 것은 표준화와 대치되는 경우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권고안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정책 문제 진단의 핵심이 되는 어떻게 라이선싱할 것인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저작권의 표준화와의 조화 및 표준의 적용차원상에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라이선싱은 하되 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사안이 무상의 경우 권리의 관할을 저작권자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표준화기구인 ITU가 일괄적으로 관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규 라이선싱이라 함은 저작권자 본연의 권한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라이선싱의 주체성을 갖고 무상 허여나 유상 허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표준화 활동상의 지적재산권정책 원리(ITU의 경우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보상 조건의 경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 뒤따를 따름이다.

권리의 귀속성에서 ISO/IEC의 저작권정책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준화기구로의 이양이라는 것은 결코 저작권의 완전 양도가 아니며 다만 그것은 라이선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원래의 권리는 저작권자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상 허여의 범위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사용은 표준의 적용 범위 기준이며 시험(test)과 평가(evaluation)를 제외한 여타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제약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라이선싱 방식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의 관점은 결국 저작권자와 표준의 이용자 입장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표준의 이용자 입장에서 단점이 되는 것은 한 마디로 표준의 이용 부담이고 이것은 비용 부담(로열티 축적 효과)과 계약 부담(라이선싱의 복잡성)으로 대별되는 문제이다. 권리의 귀속이 저작권자로 유지된 무상 라이선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표준의 이용 부담 중 비용 부담은 제거되지만 계약 부담의 문제는 잔재하게 된다. 세번째 처리 방식인 표준화기구(ITU)로의 권리 귀속은 계약 부담도 해소함으로써 표준의 이용 부담 전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저작권정책 기초의 근간이 되는 것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조화의 영역에 해당하는 저작권자와 표준의 이용자 간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귀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15].

<표 4> ITU 저작권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제 목		Draft Statement on ITU-T Software Copyright Policy (Version 6 June 2000)	
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U-T 외부 개발 - 무수정 포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저작권에 대한 증빙의 불가능 • 저작권 정보의 공개 	
2 (저작권 처리의 5가지 발생유형)	2.1 Royalty-free	2.1.1	Waiving(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음)
		2.1.2	저작권을 ITU에 이양; ITU가 무료(free of charge)의 사용권을 허여
		2.1.3	표준의 사용 한도에서 무상 라이선싱 함
	2.2	합리적이고 비배타적인 조건 하의 라이선싱 교섭	
	2.3	저작권의 제공을 용인치 않음	
3		성명서의 제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mmendation A.1의 조항에서와 같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ITU의 일반적인 무상 라이선스(복제, 발행, 판매, 배포) 허여 • 권고안의 승인 전 시험과 평가 목적의 사용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허여 	
5		저작권 주의문	

IV. 저작권정책 초안 분석

권고안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특히 독일과 미국측의 주장이 강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인 해결 방향은 저작권자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는 미국측의 주장을 기초로 한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ITU-T의 제3차 TSAG의 결과에 따라 저작권정책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것은 이후 계속된 논의를 거치면서 보완 조정되어 지난 6월에 개최된 TSAG 회의에서 다시 새로운 초안이 제시되었다. 현재까지 정리된 저작권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이 저작권정책 초안은 다섯 개의 구분된 항목이 기술되어 있고 그 이전에 도입을 위한 설명 부분이 있다. 이 설명 부분에서는 먼저 저작권정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조건은 완전한 소스코드로서 ITU-T 외부에서 개발되어 수정없이 권고안에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완전한 소스코드란 독립적으로 동작되는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소스코드를 말한다. 설명 부분의 두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표준화의 목적과 저작권의 조화 관점에서의 취지와 관련하여 특허정책에서와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권고안에

완전한 소스코드가 포함되는 것은 표준에 적합한 구현 간의 호환성을 증진시키고 경쟁을 촉진시킬 때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 항목의 내용도 특허정책에서와 유사한 일반적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작권 정보의 공개의 필요성과 그 관련 정보의 정당성에 대한 표준화기구로서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의 핵심이 되는 저작권 라이선싱에 대한 시행 방침은 두번째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특허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라이선싱 방식은 무상 허여와 조건 허여 그리고 허여 거절의 세 가지의 양상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상 허여의 경우 다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짐으로 전체적으로는 다섯 가지의 선택 방식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상 허여의 경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waive)과 저작권을 ITU에 양도하여 ITU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무상 라이선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과 표준의 사용 한도에서 무상 라이선싱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번째의 방법은 독일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네번째 항목의 내용은 특별히 Recommendation A.1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반적인 표준화 관련 문서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유포 등 표준화의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에 대하여는 무상 라이선스를 허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항목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처리와 관련된 저작권자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 문구를 관련 권고안이나 소스코드 유인물 등에 기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정책 수립의 배경과 그 적용 범위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작성중에 있다[16-21].

V. 결론

ITU의 권고안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저작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저작권 라이선싱에 의한 시장 적용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독일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표준화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계약 수행에 따른 부담과 저작자의 권리 활용상의 제약이 우려되어 전면 수용되지 못하였다. 결국 양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무상 라이선싱 방식에 있어서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저작권정책 수립의 사안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적용 범위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피치 코딩 명세의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그 사건 발생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스코드가 권고안에 포함되는 예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작자의 유상 라이선싱 권한이 사용됨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러한 권리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와 무상으로 라이선싱 한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복합성으로 인한 계약상의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의 소지는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저작권정책이 수립되어 적용됐을 때의 사례에 의하여 그 적용 효과의 귀추가 판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Ki-Shik Park, Young-Tae Kim, Hong Sohn, "Disputes o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ETRI Journal*, Vol. 20, No. 1, 1998. 3., pp. 74 - 95.
- [2] 박기식, 이선화, "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논쟁,"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 6, No. 3, SK Telecom, 1996. 5-6., pp. 350 - 361.
- [3] 이상무, 박기식, "ITU의 권고안제정과 관련된 저작권 처리에 관한 논의," *주간기술동향*, 통권891(99-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4. 14., pp. 22 - 31.
- [4] 이상무, 박기식, "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Vol. 14, No.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12., pp. 172 - 182.
- [5] □□□, □□權□ 講□, □3期 □□權□d □□家□□ 講□, □□權□□□□□□□□, 1989.
- [6] 이상무, 박기식,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 분석," *TTA저널*, 제64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99. 7-8., pp. 55 - 61.
- [7] AT&T, Copyright Impacts of Creating Software in a Collaborative Environment, *ITU-T, TSAG, the 3rd meeting*, Geneva, Sep. 1998.
- [8] NTT, FUJITSU, HITACHI, KDD, NEC and OKI, PROPOSAL ON REVISION OF DRAFT TSB SOFTWARE COPYRIGHT POLICY, Delayed Contribution, D.54, TSAG, ITU-T, Geneva, Apr. 1999.
- [9] Chairman Drafting Group,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TSB Software Copyright Policy, *First Draft of Software Copyright Guidelines Document*, ITU-T.
- [10] Chairman Drafting Group, *Report of Email Discussion on the Software Copyright Policy*, Working Document-5, TSB Director's Ad hoc IPR Group,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ITU-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Geneva, 06 June 2000.
- [11] Chairman Drafting Group, *Report of Email Discussion on the Software Copyright Policy Guidelines Document*, Working Document-6, TSB Director's Ad hoc IPR Group,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ITU-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Geneva, 25-29 Oct. 1999.
- [12] DIRECTOR, TSB, STATUS OF WORK ON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TSB SOFTWARE COPYRIGHT POLICY"

- WARE COPYRIGHT POLICY," Temporary Document 88-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ITU-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Geneva, 06 June 2000.
- [13]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OPOSAL FOR A 'CODE OF PRACTICE' REGARDING 'COPYRIGHTS,' TSAG, *CONTRIBUTION 4*, ITU-T, Jun. 1998.
- [14] FRANCE TELECOM, FRANCE TELECOM'S POSITION ABOUT COPTRIGHTS ON THE ANSI-C SOURCE CODE DESCRIPTIONS INCLUDED IN ITU-T RECOMMENDATIONS, Delayed Contribution, D.42, ITU-T TSAG, Geneva, Sep. 1998.
- [15] GERMANY, INFORMATION ABOUT THE IPR POLICIES OF DISTINCT STANDARDIZATION BODIES AND FORA, TSAG, Delayed Contribution, D.74, Geneva, ITU-T, Apr. 1999.
- [16] TSB, REPORT OF THE TSB DIRECTOR'S AD HOC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6 JUNE 2000), Temporary Document 112-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ITU-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Geneva, 7-14 June 2000.
- [17] TSB, TSB DIRECTOR'S AD HOC IPR GROUP MEETING REPORT, Temporary Document 101-E, TSAG, ITU-T, Geneva, Apr. 1999.
- [18]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REPORT OF THE 3rd MEETING(GENEVA, 7-11 SEP. 1998), REPORT R 16, ITU-T, Oct. 1998.
- [19] UNITED KINGDOM, PROPOSALS FOR HANDLING THE COPYRIGHT OF C SOIRCE CODE WHEN USED AS A NORMATIVE PART OF STUDY GROUP 16 RECOMMENDATIONS, D.31, Delayed Contribution, ITU-T, Geneva, Sep. 1998.
- [20] UNITED STATES OF AMERICA, PROPOSED COPYRIGHT POLICY IMPLEMENTATION GUIDELINES, Delayed Contribution, D.50, ITU-T TSAG, Geneva, Sep. 1998.
- [21] UNITED STATES OF AMERICA, PROPOSED COPYRIGHT, Delayed Contribution, D.51, ITU-T TSAG, Geneva, Sep. 1998.